

- 이 추록은 『2026 퍼펙트 세법학 I·II』 제17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 - 퍼펙트 세법학 I 권 제 17판 제1쇄(유은종 저, 2026.3.10.퍼냄)
 - 퍼펙트 세법학 II 권 제 17판 제1쇄(유은종 저, 2026.3.13.퍼냄)
- 이 추록은 출간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-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
 - 2026.2.28.에 공포된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영
 - 2026.3.3.에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

1. 퍼펙트 세법학 I (1쇄) 정오사항

면	행	증전의 내용	고칠 내용
1-84	하 3	<사례 1>	<사례 2>
2-11	하 5	의무에	납세의무에
4-81	상 1	③ 그 밖에 위 ① 및 ②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	③ 주식등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(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함)
4-100	하 2	지배주주의	지배주주 및 그
	하 3	지배주주의	지배주주 및 그

2. 퍼펙트 세법학 II (1세) 정오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4-48	상 5	의 경우 자산의 가액 중 자산증여액을	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

◆ p.4-34 하1~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\textcircled{1} \left(\begin{array}{cc} \text{직전 과세연도} & \text{해당 과세연도} \\ \text{상시근로자 1인당} & \text{상시근로자 1인당} \\ \text{연간 임금총액} & \text{연간 임금총액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begin{array}{c} \text{해당 과세연도} \\ \text{상시근로자 수} \end{array} \times 10\%$$

◆ p.4-35 상1~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\textcircled{2} \left(\begin{array}{cc} \text{해당 과세연도} & \text{직전 과세연도} \\ \text{상시근로자 1인당} & \text{상시근로자 1인당} \times 105\% \\ \text{시간당 임금} & \text{시간당 임금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begin{array}{c} \text{해당 과세연도 전체} \\ \text{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} \end{array} \times 15\%$$

◆ p.4-35 상8~9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\left(\begin{array}{cc} \text{직전 과세연도} & \text{해당 과세연도} \\ \text{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} & \text{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} \end{array} \right) \times 50\%$$

◆ p.4-82 상2~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\text{한도액} = \left(\text{기준소득금액*} - \text{이월결손금} - \begin{array}{l} \text{정치자금기부금} \cdot \text{고향사랑기부금} \\ \text{·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인정액} \end{array} \right) \times 30\%$$

◆ p.4-82 상7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\text{한도액} = (\text{기준소득금액*} - \text{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} \cdot \text{고향사랑기부금} \cdot \text{특례기부금}) \times 30\%$$

◆ p.4-85 상4~5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2,000\text{만원} \times \left[1 + \text{가입 후 경과한 연수} \left(\begin{array}{c} \text{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} \\ \text{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} \end{array} \right) \right] - \text{누적 납입금액}$$

◆ p.4-120 상5~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교체하세요.

$$\text{매입세액공제액} = \text{재활용폐자원 등 취득가액} \times \frac{3}{103} \left(\text{중고자동차는 } \frac{10}{110} \right)$$

- 이 추록은 『2026 퍼펙트 세법학 I』 제17판 1쇄·2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 - 퍼펙트 세법학 I 권 제 17판 제1쇄(유은종 저, 2026.3.10.퍼냄)
 - 퍼펙트 세법학 I 권 제 17판 제2쇄(유은종 저, 2026.4.08.퍼냄)
-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
 - 1쇄·2쇄 공통 추록,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(2026.4.21. 개정)

1. 퍼펙트 세법학 I (1쇄·2쇄 공통) 개정사항 (2026.4.21.개정)

◆ p.2-36 상1 아래에 추가해 주세요.

세부사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(조특법 제23조의2)

내국법인(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함)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(이익의 배당금,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배당금액)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(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)을 적용할 때 다음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$$\text{익금불산입액} = \left[\begin{array}{l} \text{외국자회사로부터} \\ \text{받은 수입배당금액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내국법인의} \\ \text{차입금 이자} \end{array} \times \frac{\begin{array}{l} \text{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*의} \\ \text{세법상 장부가액 적수} \end{array}}{\begin{array}{l} \text{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} \\ \text{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} \end{array}} \right] \times 100\%$$

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함

◆ p.2-36 하5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

세부사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(조특법 제23조의2)

위 3.의 ①에도 불구하고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% 이하인 특정외국법인)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(이익의 배당금, 잉여금의 분배금 및 의제배당금액)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.

◆ p.2-37 하2의 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해 주세요.

〈익금불산입〉 수입배당금 10,000,000 (△유보)